

● 제330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554)
검 토 보 고 서

2025. 4. 22.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신동원 의원 발의 】

의안번호 2554

I. 개정안 개요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가. 제안자 : 신동원 의원 (찬성 35명)

나. 제안일 : 2025. 3. 31.

다. 회부일 : 2025. 4. 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결혼식 공공예식장 대관료 감면 지원 대상을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뿐 아니라 서울특별시를 생활권으로 하는 대상으로 확대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고함.

나. 주요내용

- 공공예식장 대관료 감면 대상을 기존의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포함,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소재 학교 또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결혼하는 경우로 확대. (제4조의 7)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 (2025.4.5.~4.9.) 결과 : 의견없음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임영미)

1 개정안의 개요

- 서울시는 2023년도부터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개성있고 의미있는 결혼식을 지원하여 건강한 결혼식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 공공예식장(서울마이웨딩)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본 개정안은 서울시 공공예식장 사업에 참여할 경우 시설 대관료 감면대상을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뿐만 아니라 부모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녀와 서울 소재 학교 또는 직장에 다니는 자(자영업자 포함)까지 확대하기 위함임.

2 주요사항 검토

□ 대관료 감면 지원대상 확대 (안 제12조의2제1항 제1호부터 제3호 신설)

- 개정안은 기존의 공공예식장 참여시 시설 대관료 감면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의7(공공예식장 대관료 감면) ① 시장은 결혼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제4조의7(공공예식장 대관료 감면) ① -----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p><u>본인의 결혼 준비를 위해 서울시 공공예식장으로 지정된 서울시 공공시설을 대관할 경우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u></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② (생략)</p>	<p><u>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시설의 대관료</u></p> <p>-----.</p> <p>1. <u>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결혼하는 경우</u></p> <p>2. <u>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u></p> <p>3. <u>서울특별시 소재 학교 또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자영업자 포함)이 결혼하는 경우</u></p> <p>② (현행과 같음)</p>
--	--

- 서울시 조혼인율¹⁾은 광역자치단체 중 대전, 세종, 경기 다음 네 번째로 높은 편이나, 서울 기준 혼인건수는 2015년 64,193건에서 2024년 42,471건으로 33.8% 감소하였음.
- 2024년도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결혼서비스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식장 기본금액은 서울 지역이 평균 1,969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추가금액도 평균 460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1)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

- 이러한 고비용의 결혼문화는 결혼 당사자와 그들 부모 모두에게 경제적·심리적 압박을 가중시켜 청년층의 만혼 또는 비혼으로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²⁾.
- 따라서 서울시 공공예식장 사업을 확대하여 합리적이고 건강한 결혼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사업에 참여시 시설 대관료 감면대상을 결혼 당사자가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뿐만 아니라 부모가 주민등록을 둔 경우와 서울 소재 직장(자영업자 포함) 또는 학교에 다니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생활권자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등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해 보임.
-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혼인예식 장소의 제공)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수행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공시설을 혼인예식 장소로 적극 개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강가정기본법」 제29조(가정의례)제2항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가정의례를 확립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은 상위 법률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여짐.
- 다만 서울시 공공예식장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관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나, 향후 공공예식장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일부 예약이 몰리는 대관시설에 대해서는 서울 시민에게 우선 예약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나 시스템 개선을 함께 고려해

2) 국민일보, 김용현 기자, 결혼식 한 번에 5000만원... 신혼부부 울리는 웨딩플레이션, 2024.2.7.

불 필요가 있어보임.

※ 집행기관 의견(여성가족실 가족담당관)

- 소관부서는 공공예식장 대관료 감면 지원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저출생 극복 및 건전혼례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원안동의’ 의견을 제출한 바 있음.

3 **종합의견**

- 개정안은 서울시 공공예식장 사업에 참여시 시설 대관료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합리적이고 건강한 결혼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임.
- 서울 시민 뿐만 아니라 서울을 생활 기반으로 하는 사람까지 시설 대관료 감면대상을 넓혀 공공예식장 사업 참여를 장려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여짐.

문 의 처

(02-2180-8148)